

제2781호
2020. 10. 29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
전화: 3396-4955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- 제2020-772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
- 제2020-777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(안) 입법예고 5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
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772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7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이용료 의무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공공시설 이용료 의무감면 대상자 추가(제12조)
 - 현행 조례상 누락된 의무감면 대상자 추가(참전유공자법, 고엽제법, 5.18유공자법, 특수임무유공자법, 의사장사법, 국군포로송환법)
- 이용시간 조정(제10조)
 - 시설 이용시간 :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변경

3. 의견제출

-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

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문화관광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87(홍인동, 충무아트센터), 문의전화 : 3396-4622, FAX: 3396-8621, 전자우편 : khj05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박물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.)이 한다. 다만,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박물관의 건립 취지에 맞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(신설)

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박물관 내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기본 운영 및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시설 운영 시간 :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
2. 시설 이용 시간 :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

제1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1.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
2. 국민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3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
4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5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6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
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
8.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5.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9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10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, 의사자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
11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환 역류지출신 포로가족
12. 「장애인 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1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14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(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)
15.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777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릴 아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8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「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2020년 7월 2일자로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,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·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화폐의 유효기간 효력범위 확대

- 지역화폐의 종류 : 지류형 및 전자식
- 유효기간 : 발행일로부터 5년

나. 지역화폐 사용처 등록 제한업종 구체화

- 등록제한업종

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

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

·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다. 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사항 규정

- 판매대행점 협약 체결 의무화
-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 공개 및 관리(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)

라.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에 따른 준용 조항 신설

-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준용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 : 전통시장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 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의견서 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 : lemnala@junggu.seoul.kr
-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
- 3) 전 화 : 02-3396-5044 (팩스 : 02-3396-8680)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중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중구 지역화폐”(이하 “지역화폐”라 한다)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발행한 지역화폐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종이화폐와 전자화폐를 말한다.

2. “금융기관”이란「은행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,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, 「신용협동조합법」의 협동조합, 「상호저축은행법」의 상호저축은행과 「새마을금고」의 지역금고를 말한다.
3. “판매대행점”이란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.
4. “운영대행사”란 구청장으로부터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.
5. “사용자”란 지역화폐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.
6. “가맹점”이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업소를 말한다.

제3조(지역화폐의 발행 및 판매) ① 지역화폐는 구청장이 발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시 위·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지류형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 및 환전업무를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,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⑤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, 시스템유지보수 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4조(지역화폐의 종류 및 유효기간)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액면 금액은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금액을 정할 수 있다.

1. 지류형
2. 전자식
-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유통범위) ①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중구 관내로 하되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통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6조(지역화폐 사용대상) 지역화폐는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1.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

- 2. 「부가가치세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
- 3.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중구청(출자·출연기관 포함) 및 중구청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, 체육시설 등
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- 1. 『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』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
 - 2. 『식품위생법 시행령』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
 - 3. 『유통산업발전법』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
 - 4.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8조(가맹점 준수사항) ① 가맹점은 사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·변조 또는 훼손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② 가맹점은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- ③ 가맹점은 지류형 지역화폐를 받은 경우 위·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④ 가맹점은 사용자가 지역화폐 액면 금액(지역화폐를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)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⑤ 가맹점은 지역화폐 판매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할인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 다만, 할인에 있어서 담배, 신간서적 등 법규로서 할인을 제한하는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⑥ 가맹점의 소재지, 대표자 등의 변경 또는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.
- ⑦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지역화폐를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판매대행점 준수사항)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·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, 지역화폐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- ② 판매대행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지역화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는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⑤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보관·관리 등에 대해서는 「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」 및 「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」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지역화폐를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지역화폐를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지류형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, 매달 그 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의1(판매대행점의 협약 등)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운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대행사 준수사항)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분석 등을 통한 가맹점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의 수집·분석·저장 등의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.

- ②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접목·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협약서,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.

제11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.

- 1.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구청장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- 2. 지역화폐가 위조·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
- ③ 사용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발행된 지역화폐는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.

제12조(환전청구 및 환전) ①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.

- 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에 환전하여야 한다.
- 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5천만원으로 한다.

제13조(지역화폐 구입 및 할인·수수료·인센티브 제공 방법) ① 지역화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(일시불)와 체크카드로 구입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의 발행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. 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지역화폐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 지역화폐의 판매수수료와 환전수수료는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.
- ④ 인센티브 제공방법은 지역화폐 판매대행점에서 지역화폐 구매자에게 제2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다.
- ⑤ 지역화폐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카드판매 수수료는 구청에서 보전하며, 판매대행점과 협의를 통하여 지급한다.

제14조(지역화폐 활성화 시책)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판매대행점, 가맹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③ 구청장은 지역화폐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·공사·용역·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 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- ④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이나 공무원,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, 맞춤형 복지점수, 인센티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는 기업, 공익단체, 비영리민간단체, 비정부기구 등에게 지역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.
- ⑥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, 경품제공, 지역화폐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⑦ 구청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재난발생, 경기침체,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의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15조(회계장부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) ① 구청장은 지역화폐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, 판매대행점 등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제16조(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지역화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중구 지역화폐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1.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2. 판매대행점 및 위탁단체 지도·감독 결과 주요사항
- 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 - 1.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- 2. 소상공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3. 복지분야 전문가 및 유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- 4.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
- 5.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
- 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1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지역화폐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이 된다.

제19조(과태료 부과)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, 부과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제20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「민법」,「상법」 및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운영대행사·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 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.

